

금융소비자의 소리





제 3 호 (2018. 09)
금융소비자의 소리

Contents

I	2018년 상반기 금융민원 분석 ····· 2
II	소비자보호 제도개선 사항 ····· 4
III	실용금융정보 - 주요 금융꿀팁 ····· 7
IV	소비자 경보사항 ····· 37
V	주요 분쟁조정 사례 ····· 37

I

2018년 상반기 금융민원 분석

1

개황

- ◆ '18년 상반기 금융민원은 총 **40,037건**으로 전년 동기(37,164건) 대비 **7.7% 증가**
 - P2P, 암보험 등 집단성 민원 다수 발생으로 모든 금융업권에서 민원 증가
 - (은행) **4,608건** 전년 동기대비 **8.5%(+361건) 증가**,
 - (비은행) **9,336건** 전년 동기대비 **18.3%(+1,443건) 증가**
 - (생보) **9,713건** 전년 동기대비 **3.4%(+322건) 증가**
 - (손보) **14,648건** 전년대비 **2.1%(+304건) 증가**
 - (금투) **1,732건** 전년대비 **34.4%(+443건) 증가**
 - 민원비중은 **보험 60.9%**(생보 24.3%, 손보 36.6%), **비은행(23.3%)**, **은행(11.5%)**, **금융투자(4.2%)** 순

2

민원발생 주요원인

- ◆ **(은행)** 아파트 중도금 대출금리, 은행권 대출금리 조작에 대한 조사 요청 등
- ◆ **(비은행)** P2P업체의 투자원리금 미상환, 대출금리 조정 요청 등
- ◆ **(생보)** 보장성보험인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판매, 요양병원 입원치료 관련 암입원보험금 지급 요청 등
- ◆ **(손보)** 약관 미전달 등 계약의 성립 및 해지 관련 민원 등
- ◆ **(금투)** 삼성증권 공매도 등 주식매매, 펀드 상품설명 불충분 등

3

주요 민원내용 공개

◆ 그간 각 금융권역의 주요 민원유형별 건수 및 비중, 회사별 민원건수 등 단순 통계 위주로 민원동향을 제공하여 왔으나,

- 소비자의 **유사피해 방지**, 금융회사의 **민원감축노력 유도**를 위하여 금번부터 반기별로 주요 유형별 민원내용, 처리결과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공개

<금융권역별 주요 유형별 민원내용 사례>

▣ 은행

- **주요 유형** : 여신 대출금리, 여신 취급·사후관리, 예적금 계좌개설, 신용정보 등록·삭제, 방카슈랑스 등
- **민원 사례** : 연체금리 및 아파트 중도금 대출금리 과다, 중도상환수수료 과다 부과, 계좌 개설시 본인확인절차 소홀 등

▣ 비은행

- **주요 유형** :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신용카드 사용한도 및 발급, 부당채권추심 등
- **민원 사례** :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이용불만, 신용카드 이용한도 하향 및 발급 거절 해결 요청, 과도한 채권추심 독촉전화 등

▣ 보험

- **주요 유형** : 보험상품 설명 불충분, 보험금 과소지급 및 지급거절, 고지·통지의무 위반, 재해·상해등급 적용, 과실비율 등
- **민원 사례** :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설명 및 판매, 사업비·갱신보험료 등에 대한 설명의무 미이행, 특정질병 입원치료비 지급거절, 청약서 자필서명·약관전달 미이행 등

▣ 금융투자

- **주요 유형** : 펀드·파생상품 설명 불충분, 주식매매, 사이버거래시스템 장애 등
- **민원 사례** : 펀드 및 파생상품 원금손실 보상 요구, 과도한 반대매매에 의한 손실 발생, 전산장애로 인한 손실 보상 요구 등

4

향후계획

◆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하여 정보제공 및 민원정보 공개범위 확대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

- **대출금리 비교공시 강화**, '파인'을 통한 금융상품 거래단계별 **핵심정보** 제공 등 소비자 중심의 정보제공 확대
- 장기적으로 **민원인 동의** 하에 민원내용, 처리결과 등 민원정보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공개주기도 단축**해 나갈 계획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18년 상반기 민원동향 및 주요 민원내용」('18.8.20.) 참고
(담당부서 :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II

소비자보호 제도개선 사항

1

여행자보험 가입 간소화를 위한 '통합청약서' 마련

◆ 보험소비자가 편리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여행자보험 통합청약서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18.4분기 시행 계획)

- 여행자보험은 대부분 권유와 청약이 동시에 진행되므로, 상품설명서와 보험계약청약서를 하나로 합친 '통합청약서'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 일반적으로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을 권유할 때는 '상품설명서', 청약할 때는 '보험계약청약서' 및 '보험약관'을 제공

◆ 여행자보험 통합청약서 주요내용

- 현행 여행자보험의 보험계약청약서와 상품설명서에서 중복되는 내용(소멸시효, 예금자보험제도 등)은 통합청약서에서 일원화
- '상품설명서' 내용 중 여행자보험과 관련이 적은 사항(예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안내 등)은 소비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간소화하기 위해 통합청약서에서 제외
 - 소비자가 실손보험에 이미 가입하였다면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 보장 특약에 가입할 실익이 낮다는 점을 안내하는 등 '해외여행자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은 존치
-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시 계약자에게 안내되어야 할 유용한 정보인 ①해외여행 실손보험 가입 시 '보험료 납입 중지'와 ②해외 체류 시 '보험료 환급'에 관한 안내를 통합청약서에 신규 추가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여행자보험 가입 간소화를 위한 '통합청약서' 마련」('18.8.13.) 참고
(담당부서 : 보험감리국)

‘내 계좌 한눈에’ 조회서비스 저축은행 계좌까지 확대 실시

- ◆ 금융감독원은 '17.12월 본인의 은행·서민금융계좌, 보험·대출내역 등을 One-stop 조회할 수 있는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개시한 데 이어,
- '18.8.9.부터는 “저축은행 계좌”까지 원스톱 조회 대상을 확대하여 더욱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저축은행 계좌조회 서비스 내용

- **조회방법** : 인터넷(PC)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의 「내 계좌 한눈에」 메뉴 또는 모바일 전용앱에 로그인하여 '저축은행·상호금융·우체국'을 선택하여 계좌 조회
- **제공정보** : 저축은행에 가입한 수시입출금, 정기 예·적금 상품의 잔액 등 수신계좌정보를 요약정보와 상세정보로 구분하여 제공
 - 요약정보 : 저축은행별, 상태별, 상품유형별 정보 제공
 - 상세정보 : 개별계좌의 상품명, 계좌번호, 잔액 등 정보 제공
- **미사용 계좌정리** : '내 계좌 한눈에'를 통해 확인된 미사용계좌는 저축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해당 저축은행의 인터넷·모바일 뱅킹으로 해지처리 가능

※ 현재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통한 비대면 계좌해지, 잔고이전 기능은 은행계좌 (잔액 50만원 이하)만 가능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내 계좌 한눈에' 조회서비스 저축은행 계좌까지 확대 실시」('18.8.9.) 참고
(담당부서 : 감독총괄국, 저축은행감독국)

◆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분쟁 해소를 위해 과실비율 산정방법 및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일방과실 적용 확대로 가해자 책임성 강화

-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에 대하여 가해자 일방과실(100:0)로 하는 과실적용 도표를 신설·확대
- 가해자가 피해운전자의 예측·회피 가능성을 입증하도록 하여 교통법규를 지키는 운전자의 권익 보호 및 교통사고 예방

● 교통환경 변화 등에 부합한 과실비율 도표 신설

- 최근 교통환경, 법원 판례 등에 부합하도록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를 정비하여 과실비율 적용 시 분쟁 예방
- 자전거 전용도로(차로), 회전교차로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적합한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를 신설

● 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한 객관성 및 신뢰성 제고

-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대한 소비자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법조계, 학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신설
-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동 기준의 신뢰성 및 사회적 공감대 제고

● 동일 보험사 사고 등 분쟁조정 대상 확대

- 동일 보험사 가입자 간 사고도 손해보험협회 내 분쟁조정기구를 통해 객관적 시각에서 분쟁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소액 사고(분쟁금액 50만원 미만) 및 자차담보 미가입 차량의 사고도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소송 부담 해소

● 과실비율 분쟁 상담채널 확대

- 과실비율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신뢰도 높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내에 '과실비율 인터넷 상담소' 신설
- 손해보험협회 통합서비스센터('18.7.1 개시)의 과실비율 상담전화(☎02-3702-8500) 활성화 등을 통해 소비자 편의성 강화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자동차사고 과실기준이 더욱 명확해집니다!」('18.7.12.) 참고
(담당부서 : 보험감독국)

III

실용금융정보 - 주요 금융꿀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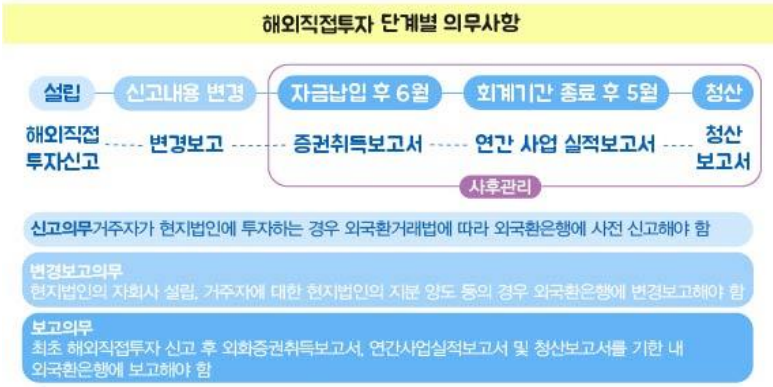
※ 금융감독원에서 제공중인 '금융꿀팁'에 대한 카드뉴스를 소개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FINE, fine.fss.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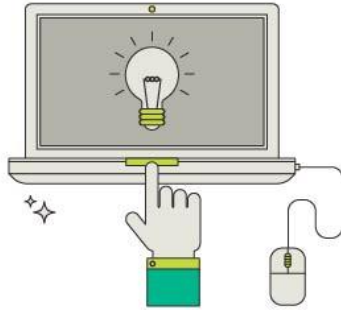
1

외국환거래법규 유의사항 (해외직접투자편)



!
**해외직접투자하는 경우,
 각 단계별로 신고-보고 사항을
 확인해보세요!**





외국환거래 관련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 업무자료 > 외국환 > 외국환거래안내를
참고하세요
(http://www.fss.or.kr/fss/kr/info/exchange/exchange_info.jsp)

해외직접투자 시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도 꼭 신고하세요!

*기계, 설비, 토지등금전 이외의재산으로 출자하는 형태



[위반 사례] 01

A씨는 베트남 현지법인에 현물 출자하면서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누락

| 관련법규 |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 현행 법규상 제재 | 검찰통보, 과태료, 경고, 거래정지 가능

☞ 거주자가 현지법인에 현물로 투자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직접투자 방식을 변경하면 보고하세요!

(대부투자→지분투자)



[위반 사례] 02

B씨는 홍콩 소재 현지법인에 1만달러를 대부투자하기로 하고
외국환은행에 신고를 마쳤으나
현지 사정으로 지분투자로 투자 방식을 변경하였는데도,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변경보고를 하지 않음

| 관련법규 |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2항
| 현행 법규상 제재 | 과태료(7백만원 정액 부과)

☞ 현지법인에 대한 투자방식 변경 등
최초 신고내용의 일부를 변경한 경우
외국환은행에 변경내용을 3개월 이내에 보고

현지법인 지분을
양도하면
즉시 보고하세요!



[위반 사례] 03

C씨는 본인이 설립한 중국 소재 현지법인을
다른 거주자(D)에게 양도하였으나
외국환은행에 변경보고를 누락

| 관련법규 | 해(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2항 단서)
| 현행 법규상 제재 | 과태료(7백만원 정액 부과)

**거주자가 현지법인 지분 일부*를 양도하여
지분율이 변경되는 경우
외국환은행에 즉시 변경보고하여야 함**

* 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양도시, 현지법인 지분 전부 매각도 포함

**지분을 양수한 거주자는 현지법인 양수가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므로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하여야 함**

지분을 양수한 거주자는 현지법인 양수가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므로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하여야 함



[위반 사례] 04

씨는 미국 소재 현지법인에 20만달러의 투자금을 납입한 후
외국환은행에 외화증권취득보고서 및
연간사업실적보고서를 미제출

| 관련법규 | 외국환거래규정 제9-9조

* 증권취득보고서 : 투자금액 납입 후 6월 이내,
연간사업실적보고서 : 회계기간 종료 후 5월 이내

| 현행 법규상 제재 | 과태료(14백만원 정액 부과)

☞ 투자 후에도 외화증권취득 및 연간사업실적 등을
외국환은행에 기한 내 보고*하여야 함

* 다만, 해외직접투자자 또는 현지법인이 휴·폐업하여
보고의무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신고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고의무가 면제됨

해외직접투자를 청산할 때도 잊지 말고 보고하세요!



[위반 사례] 05

F씨는 필리핀 소재 현지법인 지분 전부를
비거주자에게 매각하였으나
외국환은행에 청산보고를 누락

| 관련법규 | 외국환거래규정 제9-9조
| 현행 법규상 제재 | 과태료(7백만원 정액 부과)

☞ 투자를 청산*한 경우에도 청산자금을 수령하는 즉시
외국환은행에 보고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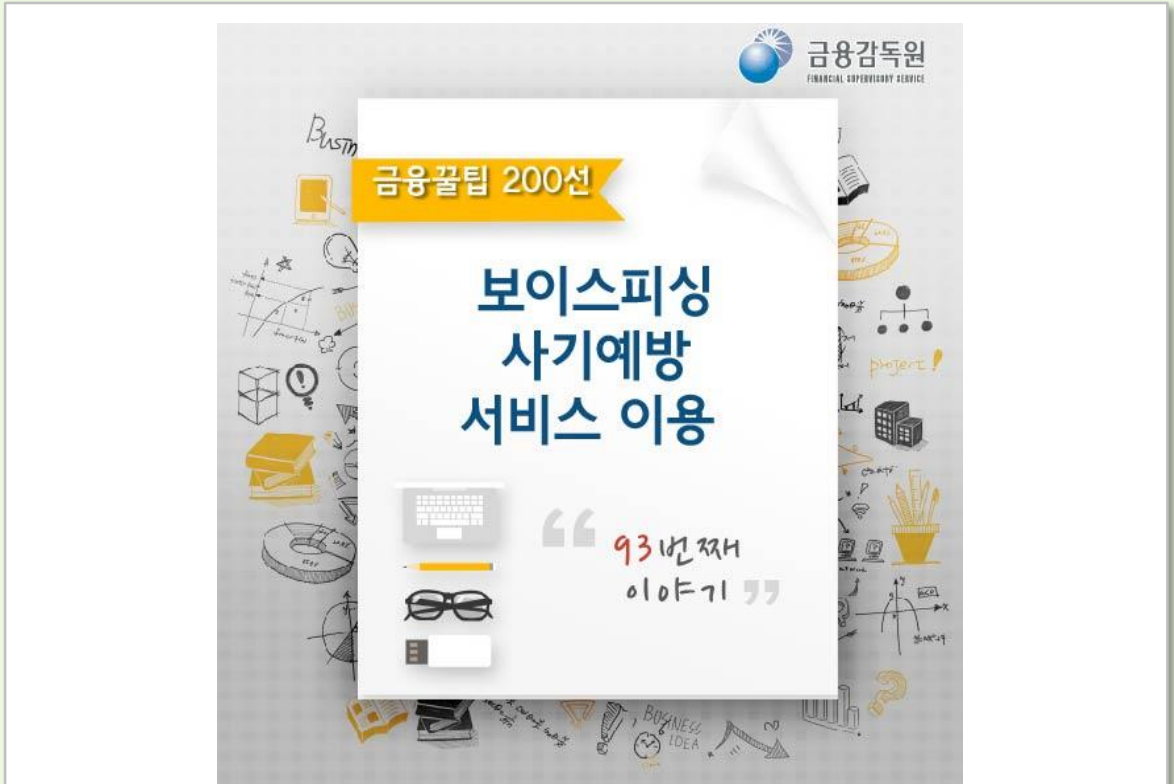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현지법인 지분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

금융감독원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금융꿀팁 200선

외국환거래법규
유의사항
(해외직접투자편)

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정보 ▶
"파인" fine.fss.or.kr 에서 찾으세요!



'보이스피싱 사기예방 서비스'를 활용하여
나와 내 가족의 계좌,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 주세요!

[보이스피싱 사기예방 서비스 5]

- ① 지연이체 서비스
- ② 입금계좌지정 서비스
- ③ 단말기지정 서비스
- ④ 해외IP차단 서비스
- 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



(사례 #1)

가정주부인 A씨(55세)는 검찰청 수사관이라는 사람이 전화해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가 필요하며, 조사가 끝나면 바로 돌려주겠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송금하라"고 하자, 당황한 A씨는 정기 예·적금을 해지하고 3천만원을 이체했음. 2시간이 지난 후 귀가한 대학생 딸에게 사정을 얘기했더니 보이스피싱이라고 하여 즉시 은행에 연락했지만 이체한 돈은 전액 인출되었음

- ① 지연이체서비스
- + ②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일명 '안심통장')

(사례 #2)

직장인 B씨는 대학생 아들(21세)이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정보, 계좌번호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중단시켰음. 성인이지만 금융지식이 부족한 아들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걱정됨. 특히, 이미 일부 정보를 입력했고 이런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다고 하여 해외에서 인터넷뱅킹으로 금전을 인출할 것이 우려됨

- ②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일명 '안심통장')
- + ③ 단말기지정서비스
- + ④ 해외P차단서비스
- + 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1. 지연이체서비스

이체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시간(최소 3시간) 경과 후 입금
 (창구거래 비적용)



이체신청 후 일정 시간내
 (최종 이체처리시간 30분 전까지) 취소가능



**☎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실행한 이체를 일정시간내 취소 or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체서비스 시간별, 계좌별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 * 이체 지연시간 최소 3시간 이상 일정 시간 단위로 선택 가능
- * 지연이체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본인이 별도로 건별한도(최대 100만원)를 설정하여
 즉시이체 서비스도 이용가능
- * 해당 은행 본인계좌간 송금,
 사전 등록된 계좌간 이체 등 일정한 경우 즉시이체 가능



[예시] 지연이체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 모르는 사람에게 고액 송금 : 지연이체 적용
- 사전등록한 부모님이나 자녀 용돈 송금 : 즉시이체 가능*
- 사전등록한 거래처에 자금 이체 : 즉시이체 가능*
- 쇼핑 등 소액 결제자금 이체 : 즉시이체 가능*

* 사전 등록 필요(소액·정기·반복적 이체계좌는 사전 등록시 자유롭게 이체 가능)

※ 동 서비스는 해당 금융회사 인터넷(스마트)뱅킹,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마다 서비스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일명 '안심통장')

본인이 미리 지정한 계좌로는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지만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가능
(1일 1백만원 이내 이체한도 설정)
(창구거래 비적용)

* 본인의 전자금융 이체한도 내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
정보유출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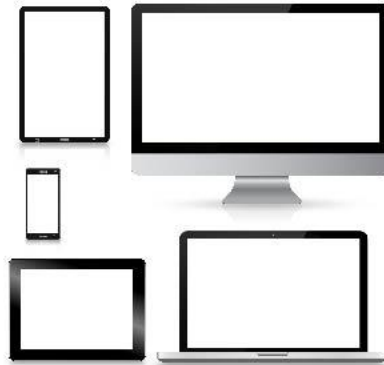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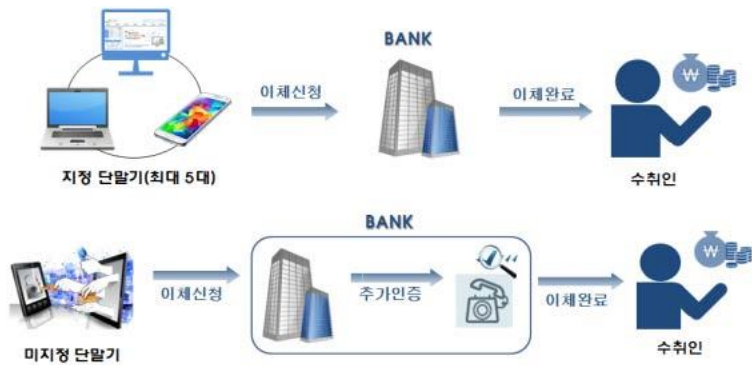
※ 동 서비스는 해당 금융회사 인터넷(스마트)뱅킹,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마다 서비스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단말기지정서비스

본인이 미리 지정한 PC, 스마트폰 등에서만
이체 등 주요 거래가 가능한 서비스

지정하지 않은 PC 등에서는 조회만 가능하고,
이체 등 거래를 위해서는 추가 인증 필수
PC는 스마트기기를 포함하여 최대 5대까지 지정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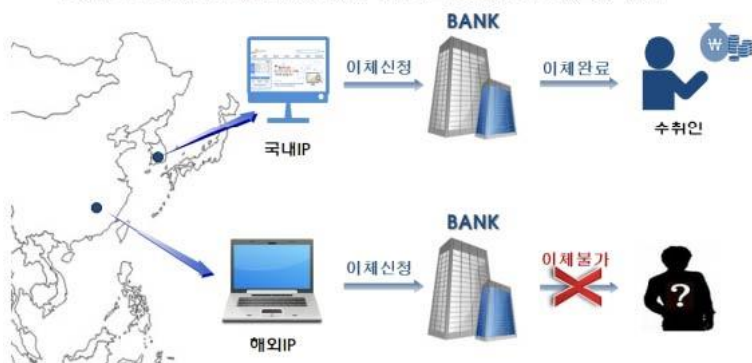
※ 동 서비스는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또는 지정을 원하는 PC나 스마트기기(스마트폰, 태블릿PC 등)에서 인터넷(스마트)뱅킹 로그인 후 가능하며, 은행마다 서비스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4. 해외IP차단서비스

국내 사용 IP대역이 아닌 경우
이체거래를 할 수 없도록 차단 서비스

**정보유출 또는 해킹 등으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해외에서 시도하는 금전인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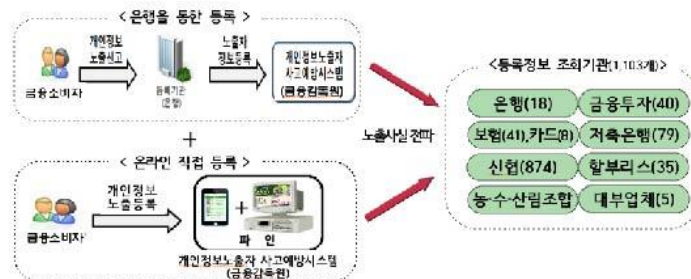
※ 동 서비스는 해당 금융회사 인터넷(스마트)뱅킹,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에 따라 이용되지 않는 은행이 있거나 서비스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5.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개인정보가 노출된 금융소비자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할 경우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노출자 명의의 거래시 본인확인절차를 강화
명의도용이 의심될 경우 거래를 제한함으로써 금융사고를 예방



※ 단,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되면 인터넷뱅킹을 통한 거래가 일부 제한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위험 해소 등의 경우 즉시 PC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추가 Tip1. 보이스피싱 전화 차단 >

스마트폰에 'T전화', '후후', '후스쿨' 등과 같은 스팸 차단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을 설치하면 사전에 발신번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의 앱마켓에서 'T전화', '후후', '후스쿨' 등을 검색하여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됩니다

< 추가 Tip2. 주민등록번호 변경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가 걱정되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누구나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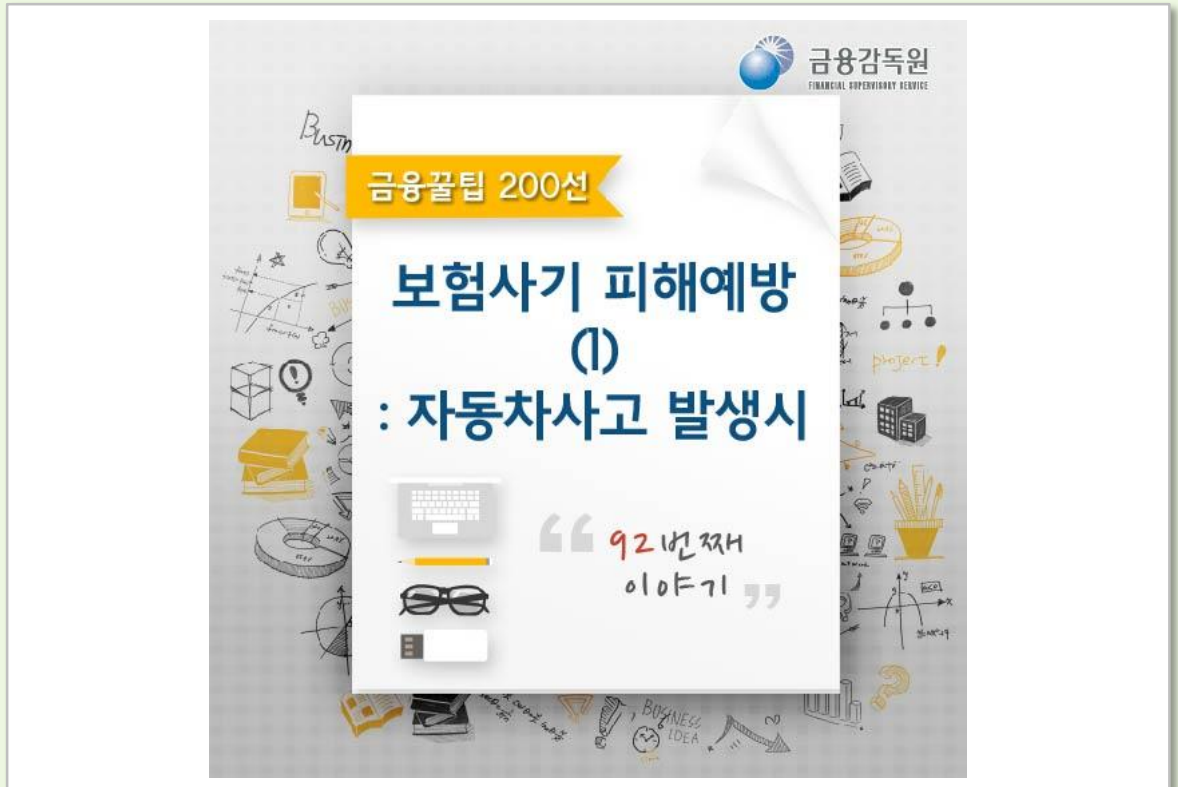
(변경방법)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서와 입증자료*를 가지고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입증자료 예시 : 금융거래내역서(송금전표 등),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법원 판결문 등

※ 주민등록번호변경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http://www.rmcc.go.kr>)



The poster features a background of hand-drawn sketches including a smartphone, a pie chart, a lightbulb, and various financial symbols. At the top right is the logo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SS) with the text '금융감독원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 yellow banner on the left reads '금융꿀팁 200선'. The main title in the center is '보이스피싱 사기예방 서비스 이용'. At the bottom, there is a logo for '파인' (FINE) and the text '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정보 ▶ "파인" fine.fss.or.kr 에서 찾으세요'.



나도 모르게 자동차 보험사기꾼의 표적?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휘말릴 수 있는 **보험사기**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자동차사고 유형**과
사고 발생 시의 **대처방안** 알아두세요



대표적인 보험사기 유형은?

- *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 등에 손목 발목 등 신체 일부를 고의로 접촉한 후, **사고현장에서 직접 합의금(현금)을 요구**
- * **다수인이 탑승한 차량으로** 진로변경,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등에 대해 접촉사고를 유발하고 **고액의 합의금과 장기 입원금 청구**
- * **고가의 외제차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후진차량이나 신호위반 차량 등에 접촉 사고를 유발하여 **고액의 미수선수리비 청구**



보험사기 범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상대방이 당황한 상태에서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사기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가해자로 몰릴 경우 형사상의 합의금 외에 범칙금 및 보험료 할증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범들은 주로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하므로

평소 교통법규 준수 및 안전운전의 생활화!



블랙박스 설치를 통해 보험사기 피해에 대비하세요

3가지 대처요령

- #1 먼저,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세요
- #2 합의는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 #3 증거자료와 목격자를 확보하세요

1. 먼저,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세요.

* 경찰서 신고로 뺑소니 우려와 손목치기 등의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

* 보험사 사고접수를 통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사고처리가 가능



 보험사 사고접수 ≠ 최종 보험처리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더라도
향후 지급보험금 및 할증보험료 규모 등을 감안하여
최종 보험처리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주요 사고유형별 보험사기 예방법

1 법규위반 사고

- 불법유턴, 일방통행도로 역주행 등 법규위반 차량은 이를 빌미로 가해자로 몰릴 수 있으므로 도로표지판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교통법규를 준수

2 차선변경 사고

- 차선 변경시 후미차량의 의도적인 급가속으로 인해 추돌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경대상 차선에서 진행되는 차량유무를 확인하고 뒷차와의 충분한 거리를 확보한 후 차선을 변경

3 후미추돌 사고

-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경우 신호변경 등을 이유로 선행차량이 급정거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



4 후진사고

- 후진차량을 대상으로 이륜차, 신체 일부에 접촉하여 경미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차량 후면을 확인하고 후진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 운전

5 보행자 신체접촉 사고

- 횡단보도나 좁은 골목길에서 보행인이 차량에 손목·발목 등을 고의로 부딪쳐 사고를 위장할 수 있으므로 보행인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는 서행하고 보행인이 통행중인 경우 보행인이 안전하게 지나간 후에 이동



6 사고처리 미흡 운전자 대상 사기

- 차량 손상이 거의 없는 경미한 교통사고 발생 시 뺑소니로 몰리지 않도록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불가피하게 합의를 하는 경우 합의내용, 상대방의 인적사항, 자필서명 등이 포함된 합의를 작성

※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보험가입자에게 그 피해로 돌아옵니다.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례 발생시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 주세요

보험사기 신고

▶ 금융감독원

- ① 전화(1332→4번→4번), 팩스(02-3145-8711)
- ② 방문, 우편(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우편번호 07321)
- ③ 인터넷(보험사기방지센터 <http://insucop.fss.or.kr> → 우측의 '보험사기 신고센터')

▶ 보험회사 : 보험회사별 홈페이지 내 보험사기신고센터



“실손보험 있어요?”

질병이나 사고로 병원 방문했을 때

☞ **병원에서 허위·과장 진료 권유시**
다음사항을 유의하세요

3가지 대처요령

- ① 불필요하게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거나, 보험금으로 무료 시술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은 일단 의심하세요
- ② 진료사실과 다른 진료확인서는 요구하지도 받지도 마세요
- ③ 의심스러운 병원은 이용을 피하고 수상한 점은 신고하세요

① 불필요하게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거나, 보험금으로 무료 시술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은 일단 의심하세요

(사기유형) #1

내원한 환자에게 접근



실손의료보험 가입했는지
불필요하게 확인*

* 미가입자에게는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고 내원할 것을 안내하는 경우도 있음



보험금으로 의료비용을 해결해 주겠다고
미용시술** 등을 권유

**미용시술은 실손의료보험 약관상 보장대상이 아니므로
허위확인서 등을 통해 보험금 청구



환자는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이에 동조

실손의료보험 가입했는지?

미용시술 하시겠습니까?



(사기유형) #2

"공짜로 입원 치료를 받게 해 주겠다"
일부 보험설계사들은 보험을 권유·체결하고
결탁한 병원을 통해 보험금 편취를 조장



<보험사기 적발사례>

- ◇ A병원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환자를 대상으로 보장대상이 아닌 피부관리, 미용시술을 권유 시행하고 마치 보장대상 질병치료를 한 것으로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
- ◇ B정형외과는 병증이 없거나 고정치료로 충분한 경증질환자에게 실제 수술을 시행한 것처럼 수술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불필요한 수술을 시행하고 진단명, 수술기록을 조작

| 유의사항 |

보험상품은 **우연한 사고**(질병, 상해 등)를 보장하기 위한 것!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사고내용을 조작·확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편의를 봐주겠다는 유혹에 넘어가
질병, 상해의 내용을 조작·확대하는 행위에 가담하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그 순간,
스스로를 보험사기자로 내몰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② 진료사실과 다른 진료확인서는
요구하지도 받지도 마세요

(사기유형) #1

진단서 위조!!!

일부 병원은 돈벌이 수단으로 환자를 유치,
일부 환자는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하여

실제 진료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의 발급을 제안하거나 요구하고,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부당편취**



<보험사기 적발사례>

- ◇ C씨는 임원일당을 보장하는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한 후
실제로는 주거지에서 생업에 종사하면서 **진료기록부상**으로만 입원처리하여 보험금을 수령
- ◇ D치과의 치위생사는 임플란트만 식립한 환자에게
치조골 이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를 식립한 것으로 **진단서를 위조**하여 발급

Ⅰ 유의사항 Ⅰ

입원기간을 늘리거나,
통원을 입원으로 기재한 입 퇴원확인서 등
사소한 점이라도
의료기록을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면
그 자체가 **명백한 범죄행위!**
(문서 위 변조 관련, 사기)



☞ 의료관련 보험사기의 특성상
의사·간호사 및 환자·보험설계사 등
다수의 공모가 수반되며,
문제병원은 계속해서 보험사기에 연루하므로
언젠가는 적발될 수밖에 없으니 유의하세요

③ 불필요하게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거나,
보험금으로 무료 시술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은
일단 의심하세요

(사기유형) #1

일부 재무상태가 취약한 병원이나 "사무장병원"

브로커 통해 서류상 입원하는
"나이통환자" 모집

허위 진료확인서를 기초로 보험금 수령 후 수수료 명목으로
브로커와 보험금을 분배

병원은 허위 진료기록을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수령



<보험사기 적발사례>

- ◇ E 병원은 브로커와 연계하여 허위·대리입원 환자를 주로 유치하고, 내원한 환자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 및 치료 전력을 물어 **비급여약제를 다수 처방**
- ◇ F 사무장병원은 내원환자에게 일정액을 내면 **최초 내원일 이전부터 소급하여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 주겠다고 유인**하고, 그 대가로 실제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1일당 4~12만원을 수령**

| 유의사항 |



문제병원은 주로 과잉 진료, 보험사기 연루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환자는 정상 진료를 받았더라도 추후 병원의 사기 혐의로 덩달아 조사를 받을 가능성 있어요

※ 이런 병원은 가능한 이용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 ① 입원환자 대부분이 병실에 없거나
- ② 기록관리 없이 외출이 자유로운 병원.
- ③ 진료기록을 실손 보장항목으로 조작하는 병원.
- ④ 수익 목적의 사무장병원*으로 소문난 병원 등 ...

* 의료인 아닌 개인이 병원을 개설한 후 의사를 고용하여 운영(의료법상 불법)

※ 당부사항 ※

보험사기 피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며 의료기관이 연루되는 보험사기는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

무료진료·수술 받을 수 있다구요!

의료기관으로부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은 환자나, 허위 진료확인서 발급에 협조하는 의료인을 목격한 의료기관 종사자의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회사에 적극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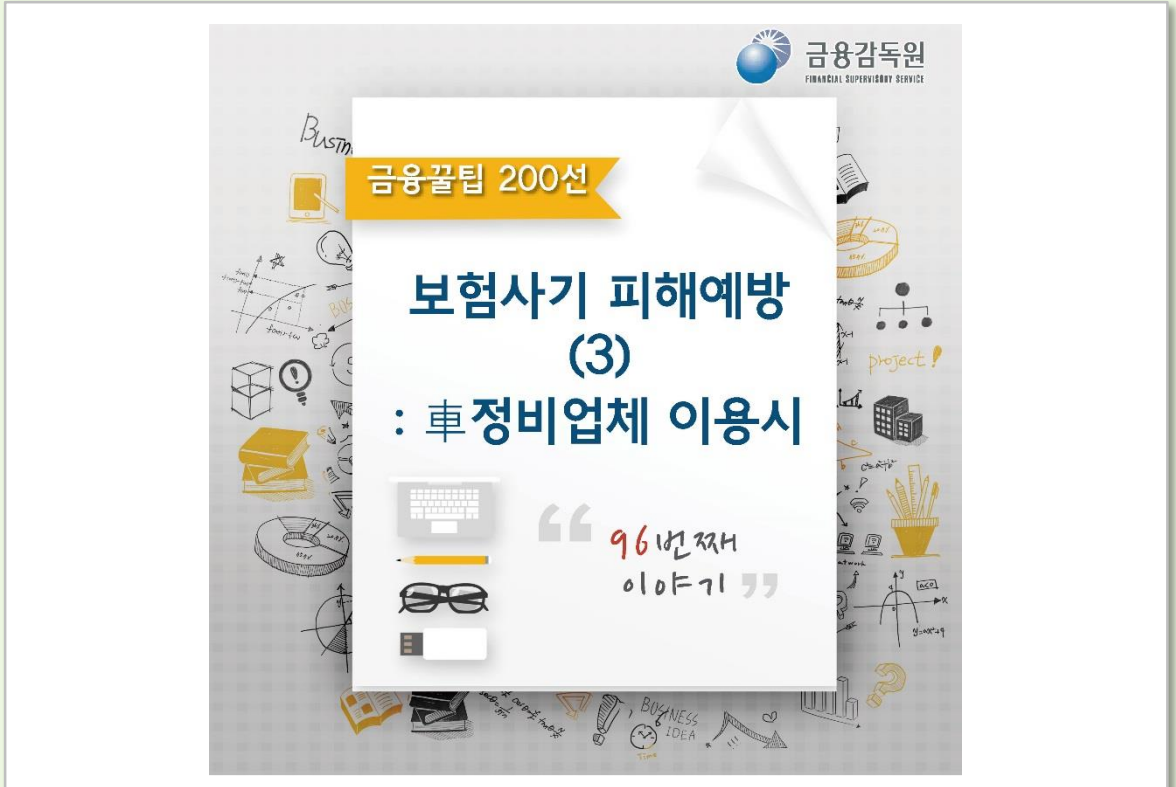
보험사기 신고방법 및 요령

▶ 금융감독원

- ① 전화 (1332 → 4번 → 4번), 팩스 (02-3145-8711)
- ② 방문, 우편
- ③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보험사기방지센터 <http://insucop.fss.or.kr>
→ 우측의 '보험사기 신고센터'

- ▶ 보험회사 : 보험회사별 홈페이지 내 보험사기신고센터
(금융원 보험사기방지센터(<http://insucop.fss.or.kr>) 접속
→ 보험사기신고 →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 참고)

※ 민영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제보자에게 포상금 지급



정비업체 이용시 보험사기 우려, 다음 사항을 유의하세요

3가지 대처요령

- 1 차량을 무상으로 수리해주겠다는 제안은 일단 의심하세요
- 2 허위 렌트청구로 보험금을 나눠 갖자는 제안은 단호히 거절하세요
- 3 의심스러운 정비업체는 피하시고, 사기 의심시 신고하세요



1 차량을 무상으로 수리해주겠다는 제안은 일단 의심하세요



(사기유형)

정비업체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주겠다며 사고차량의 **파손부분을 확대**하거나 **사고와 관계없는 부분까지 수리**한 후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하고, **차주는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이에 동조

심지어 일부 정비업체는 사고없이 정비·점검을 위해 방문한 차주에게 무상으로 수리해주겠다며 보험사에 **허위사고 접수**를 유도

〈보험사기 적발사례〉

A정비업체는 사고차량 차주와 공모하여 차량 좌측 전체를 도장하기 위해 파손이 되지 않은 좌측 뒷부분을 고의로 파손한 후

보험사에 차량 좌측 전체가 담벼락과 접촉하였다고 사고접수
(총 31건의 수리비용을 허위청구하여 보험금 28백만원을 편취)

(유의사항)

발생하지도 않은 차량사고를 허위로 접수하거나
사고내용을 확대·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가담·동조하는 경우
정비업체와 함께 **보험사기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남들도 다 이렇게 하니 괜찮다”

주변의 유혹에 현혹되지 말고,
실제 사고내용에 맞게 수리하는게 중요

2 허위 렌트청구로 보험금을 나눠 갖자는 제안은 단호히 거절하세요

(사기유형)

자동차 사고 시, 수리기간 동안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을 약용하여
차주와 정비업체·렌트업체 등이 공모

실제로는 차량을 대여하지 않고
렌트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렌트 기간이나 차종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수령

<보험사기 적발사례>

B 렌트업체는 정비업체와 공모, 자동차 수리를 받으러 온 차주들을 현혹시켜, 허위로 렌트계약을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청구

(총 1,135건(5.3억원)의 부당 보험금을 편취하여 차주들과 분배)

(유의사항)

사소한 금액이라도 **허위 렌트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명백한 범죄행위**



사소한 금액으로 시작한 보험금 편취행위가 더 대답하고 더 큰 보험금을 노리는 **강력범죄로 이어져** 결국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에 유의하세요

3 의심스러운 정비업체는 피하시고, 사기 의심시 신고하세요

(사기유형)

일부 정비업체에서 차주도 모르게 **다른 차량의 수리사진을 끼워 넣는 등 수리내역을 조작**하여 보험금 청구

특히, **사고 피해자**의 경우 가해차량 보험사에서 보험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수리비용에 무관심**하고 보험회사에서도 정비업체의 조작된 청구서류를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

<보험사기 적발사례>

C정비업체는 사고사실이 없거나 수리하지도 않은 부분을 다른 차량의 수리사진 또는 검사기록지를 끼워넣거나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 ('15.5월~' 16.4월까지 총 1,031건(8.5억원))

문제 정비업체의 특징 : 렉카(사고 견인차) 등에 과도한 커미션을 주고 사고차를 입고하게 유도하여, 허위(과잉) 수리 등을 이용해 보험금 청구

(유의사항)

허위·과잉수리를 일삼는 문제 정비업체 이용시,
차주는 정상적인 수리를 받았더라도 추후 정비업체의 사기혐의로
덩달아 조사를 받는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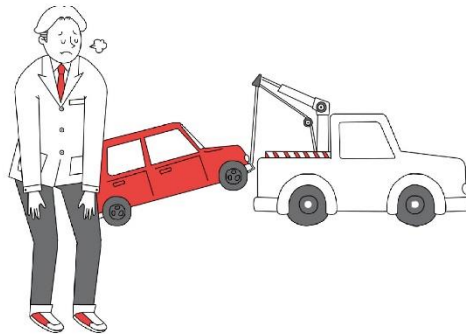
이런 업체는 가능한 이용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 사고조작이나 피해과장을 권유하거나,
- 차주가 원하는 대로 수리내역서를 조작(변경)해주는 업체,
- 피해범위를 고의로 확대하는 것으로 소문난 정비업체 등

꿀팁 +1
하나더!

사고현장에서 견인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면,
우선적으로 추가사고 및 교통흐름을 고려하되
보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 제휴 견인 서비스나 한국도로공사의 긴급견인서비스 이용을 추천
다른 견인차를 이용하게 된다면, 이용前 거리, 비용 등을 협의하고
보험사가 추천한 정비업체로의 이동(입고)가 바람직



✘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보험가입자에게 그 피해로 돌아옵니다!**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례 발생시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 금융감독원 신고 전화 | (1332→4번→4번)
- 인터넷 | (보험사기방지센터 <http://insucop.fss.or.kr>)
- 보험회사 | 보험회사별 홈페이지 내 보험사기신고센터
 - 보험사기방지센터 접속
 - 보험사기신고
 -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 참고

금융감독원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금융꿀팁 200선

**보험사기 피해예방
(3)
: 車정비업체 이용시**

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정보 ▶
“파인” fine.fss.or.kr 에서 찾으세요

IV

소비자 경보사항

1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주의



소비자 경보 3호 발령 내용

최근 검사를 사칭한 사기범이 정교하게 복제된 가짜 서울중앙지검 홈페이지 및 위조된 공문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을 시도한다는 제보가 다수 접수되어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구체적인 사기수법

최근 검찰을 사칭하는 사기범은 '가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홈페이지' 및 '검찰총장 직인까지 위조된 가짜 공문'을 보여주면서 "대포통장 사기에 연루되었으니 자산보호를 위해 통장의 돈을 모두 인출하여 보내줄 것"을 요구

사기범은 제보자가 자신의 말을 믿도록 하기 위해 수사공문을 보여주겠다고 하며 '가짜 홈페이지(https://43.240.13.14, 현재 차단됨)에 접속하여 '나의 사건조회'를 클릭하도록 유도, '나의 사건조회'를 클릭하고 성명(XXX)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사건개요와 함께 위조된 서울중앙지검 공문을 보여줌

2. 조치내용

금감원은 가짜로 의심된 동 사이트를 신속히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통보하였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가짜임을 확인하고 차단

3.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검찰·경찰·금감원 등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상으로 자금의 이체 또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 "일단 의심하고,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사실관계 및 진위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드림
* 검찰(☎130), 경찰(☎112), 금감원(☎1332)
- 또한, 정부기관·공공기관을 사칭한 가짜 사이트를 발견하는 즉시 한국인터넷진흥원(☎118 또는 www.boho.or.kr)에 신고



실제 홈페이지와 가짜 홈페이지 구별방법(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주소창의 인터넷주소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신뢰할 수 없는 웹사이트는 방문하지 말 것

- 일반적으로 정부기관 웹사이트는 "go.kr", 공공기관은 "or.kr"로 끝나는 인터넷주소를 사용
➡ (특히) 숫자로 된 주소는 가짜일 가능성이 높음
- 금융회사 홈페이지는 주소창 색깔이 녹색이고 자물쇠 그림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녹색·자물쇠가 없는 사이트는 가짜일 가능성이 높음
- 실제 홈페이지는 수시로 관리되므로 최신 자료가 게시되어 있음
➡ 과거 자료가 홈페이지 첫 화면에 노출되어 있는 사이트는 가짜일 가능성이 높음



소비자 경보 내용

#1 주식·선물 투자시 “수익률 300%까지 무료로 리딩”을 해준다며 도박형 사기 사이트에 투자를 유도한 후 투자금을 편취

#2 주식·선물 거래를 빙자한 인터넷 사기 범죄로 피해를 입었거나,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금감원에 상담

최근 주식, 선물 등의 상승·하락에 단순 베팅하는 도박형 사이트를 이용하다가 투자사기를 당했다는 제보·상담 건이 다수 접수

사기업자는 '자신들의 말대로만 투자하면 3배 이상 벌 수 있다'며
고수익을 제시하고 주식·선물 거래를 하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편취

18.5월말부터 현재('18.7.13.)까지 제보·상담을 통해
파악된 피해건수는 12건, 피해금액은 총 2.5억원 발생
(1인당 최대 피해금액은 8천만원)

피해자들은 '먹튀' 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에 상담을 요청하고 있으며,

금감원에 상담하기 전까지 정상적인 주식·선물 거래를 한 것으로
오인하는 등 사기수법이 교묘*하여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

* 일부 피해자는 어떤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고수익을 낸다는 사기업자의 말만 믿고 '몰지마'식 투자를 한 상황



고수익으로 유혹하는 광고글은 무조건 의심

- "수익률 300% 보장", "원금의 3배까지 무료 리딩" 등 터무니없는 수익률에 현혹*되어 '몰지마' 투자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시하더라도 반드시 의심
- 사이버 범죄의 특성상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수익률 왜곡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수익이 나더라도 출금이 어려우므로 불법 사이트에 투자금을 송금하는 것은 절대 금물
- 사기업자는 홈페이지상 회사명과 전혀 다른 법인 명이나 개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을 요구한다는 점에 유의





금감원을 사칭하는 가짜 이메일 신고가
다수 접수되고 있고, 악성코드 감염 우려 및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 가능성이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최근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금감원을 사칭한 “유사수신행위 위반 통보”라는 이메일을 받았다는
내용의 신고·상담 접수(18.8.6.~8.8. 기간중 8건)

문제의 이메일은 수신자에게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및
사기 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금감원의 조사대상이 되었음을 통지하고,
조사를 위해 주민등록증 및 은행 통장을 준비하여
금감원(불법금융대응단)에 8.13.까지 오라는 내용

| 이메일 삭제 | 금감원을 사칭하는 가짜 이메일을 열거나 첨부파일을 실행·다운로드할 경우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으므로 해당 이메일을 즉시 삭제

- 악성코드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 홈페이지(www.boho.or.kr) 또는 118상담센터(☎118)로 즉시 신고

| 신분증 및 통장 등 제공 금지 |

신분증 또는 통장(현금카드)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말 것

- 신분증을 제공한 경우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 접속하여 “신분증분실등록·해제” 메뉴를 클릭한 후,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
※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시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일부 거래가 제한될 수 있음

| 보이스피싱에 유의 | 향후 사기범이 금감원을 사칭하면서 유사수신 사건 연루 조사 등을 빙자하여 보이스피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유의할 필요

- * (예시)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거나 안전조치 등을 명목으로 자금의 인출 및 이체·송금 요구 등

| 금감원에 신고 | 각종 사건조사 등을 빙자한 이메일이나 우편을 수신하는 경우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신고

- 금감원은 유사수신행위 등 각종 조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이메일로 위반사실을 통보한다거나 출석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개인 통장 등 금융거래 정보도 요구하지 않음



주요 분쟁조정 사례

1

KT ENS 신탁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

- ◆ **(분쟁개요)** '13년말~'14년초까지 은행에서 판매한 KT ENS 관련 특정금전 신탁상품에 가입한 투자자 일부(48명)가 신속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 신청
- ◆ **(조정결과)** 신청인 48명 중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투자자 26명에 대해 은행이 손해배상금을 즉시 지급하도록 결정하고 불완전판매가 확인되지 않은 22명에 대해 기각 결정
 - * 은행이 투자정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투자권유하거나 원금손실 가능성 등 설명 사실이 없었던 사례 등
-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 회수될지 알 수 없는 해외PF사업장 투자금 등을 현 시점에서 전부 손해액으로 추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배상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 이후 회수되는 신탁 투자금이 있는 경우 이미 지급한 배상액을 반영(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것을 권고

2

즉시연금 및 암입원보험금 분쟁 관련

- ◆ **(즉시연금)** 피신청인(보험회사)이 신청인(보험계약자)에게 연금액 산출기준에 관해서 명시 및 설명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지급 결정
- ◆ **(암입원보험금)** 신청인들이 치료받은 상황* 등을 감안하여 암입원보험금 지급책임 유무에 대해 지급 및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각각 판단
 - * 요양병원 입원이 치료의 과정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신청인이 항암치료 과정에서 추가 암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하게 입원한 경우에는 암입원보험금 지급 결정
- 신청인이 항암치료 종결 후에 발생한 후유증 내지 합병증만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경우에는 암입원보험금 청구 기각 결정



금감원콜센터 1332

금감원콜센터(국번없이 1332)는 전화 한통화로 금융에 대한 다양한 상담 및 신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콜센터입니다.

금융회사에 대한 불만 및 피해상담, 불법사금융 신고, 금융자문서비스 등 금융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관련 질의사항, 무엇이든 1332로 물어보세요”

- 상담시간 | 평 일 : 오전 9:00 ~ 오후 6:00
-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언어·청각장애인을 위한 인터넷 채팅상담 및 화상(수화) 상담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 금융회사에 남아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금융채무, 보관금품의 존재유무 및 공공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금융정보·교육 서비스

-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FINE)」 | <http://fine.fss.or.kr>
* 금융거래과정에서 필요하거나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를 망라하여 제공
- 금융소비자보호처 홈페이지 | <http://consumer.fss.or.kr>
* 금융거래시 유의사항, 금융상품 비교정보 제공 등
- 금융교육센터 | <http://edu.fss.or.kr>
* 금융교육 관련 정보 제공 및 금융교육·교재 신청 가능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